



동일 전기용품에 대한 이중규제의 허와 실



한국PL상담센터협의회 회장 나경수
(02)579-3291 jih@ekesa.or.kr

1.배경

동일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기능평가를

달리함에 따라 적용법률을 달리하여 각각의 법에서 따로 규제함으로 제조업체는 불필요한 규제를 2중,3중으로 받고 있음으로 이의 개선이 요망됨.

(1) 전기 맞사지기

(가) 규제현황

적용법률	전기용품안전관리법	약 사 법
주 무 부	산업자원부	보건복지부
제품기능 평 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용 건강 보조기 (전동력응용기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미한 근육통증 완화 (의료용 바이브레이타)
규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적 :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,감전등의 위험 및 장애발생 방지 (법 제1조) 방법 : 안전인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적 : 질병의진료,치료,경감처치 또는 예방(법 제2조 9항) 방법 : 제조업 허가, 제조품목허가인증 (허가)



<p>인증(허가) 기 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○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○ 산업기술시험원 ※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인증지정기관(법 제3조) (제조업체 임의로 3개기관 중 택일 인증신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의약품안전청 ※ 법 제26조(제조업의 허가등)에 의한 허가 관청
<p>시험기관 및 비 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동(3개 인증기관) 인 증 료 : 60,000원 - 공장심사 : 200,000원 - 시 험 료 : 2,426,180원 계 : 2,686,18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○ 산업기술시험원 ※ 의료용구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(등록)에 의한 등록시험기관 - 시험기준 및 방법승인 : 30,000원 - 시 험 료 : 3,152,000원 - 공장심사 : 1,200,000원 - 제조업 및 품목허가 : 10,000원 계 : 4,392,000원
<p>인증(허가) 소 요 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5일 - 인증처리기간 : 15일 - 시험소요일 : 30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24일 - 시험기준및방법승인(식약청): 59일 - 시험소요일(등록시험기관) : 30일 - 제조업 허가 : 25일 - 제조품목 허가 : 10일

(나)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 당위성

식승인)은 1970년도로부터 제품이 국내 생산된 이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나

(문제점)

- 동일 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절차로 2중 규제 함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시간, 비용상의 낭비와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
-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시험과 약사법에 의한 시험이 모두 제품의 사용상 안전시험임(약사법에 의한 시험 내용에 치료 예방에 관한 시험 없음)
-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제품인증(구, 형

- 약사법에 의한 제품허가는 1986.2.21 보사부 고시로(제86-12호) “의료용 마이그레이터”가 고시되었으나 그간 동법에 의한 허가 시험이 없었던 것을 15년이 경과한 2001.1.30~31 양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청, 관세청 합동으로 의료용구 동권업무 설명회”를 개최하여 전기및사지기가 의료용 마이그레이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, 다음달(2001. 2. 1)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있





(2중 규제 단일화 효과)

○ 정부 행정의 효율 증대

- 중복규제를 단일화하므로 정부 행정서비스 향상, 인력 절감 및 예산절감에 기여
- 전기맞사지기 제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편의 제공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정부의 신뢰 증진

○ 인증(허가) 제도를 단일화하므로 인력·비용 및 시간 절약

- 연간 329백만원 절약

•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손실 절감

• 4,392,000원/건당 × 5모델 × 15업체 = 329,400,000원

- 제품 출하기간 단축 : 제품별로 출하시기를 각각 2개월 이상 단축

• 124일(약사법에의한 허가 소요일) - 45일(안전인증 소요일) = 79일

- 절약된 인력, 비용, 시간을 품질 및 생산성향상에 재투입 하므로 품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

(2) 비디오폰(일명 : 홈오토메이션기기)

(가) 규제현황

법률적용	전기용품안전관리법	소 방 법	전기통신기본법
주무부	산업자원부	행정자치부	정보통신부
제품기능 평 가 (법률소관)	기본기능 : 가정용전기용품으로 현관(또는 대문)에 도착한 방문객을 비디오폰으로 확인 통화한 다음 문을 열어 주는 장치	기본기능에 부대기능으로 부착한 "화재감지기" 가 소방법에 해당	기본기능에 부대기능으로 부착한 "시내전화기능"이 정보통신기본법에 해당
규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 :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, 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발생방지(법제1조) ○ 방법 : 안전인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 : 소방용기기구등을 제조(수입포함)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처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 야함 (법 50조 1항) ○ 방법 : 형식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 :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, 판매 또는수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함 (법 제33조의 제 1항) ○ 방법 : 형식승인
인증(승인) 기 관	<p>(인증기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○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○ 산업기술시험연구원 *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 (법 제3조) - 제조업체는 임의로 3개 기관중 택일 인증신청 	<p>(승인 및 검정기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소방검정공사 * 소방법 제103조에 의한 특수법인 	<p>(승인기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연구소 *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법정위임기관



<p>시험기관</p>	<p>○ 상 동 (3개 인증기관) 인증료 : 60,000원 - 기본모델 시험료 : 198,400원 * 1회 인증으로 계속 생산</p>	<p>○상동(한국소방검정공사) - 형식승인료 : 659,000원 - 검정수수료 : 개당 1,547원 * 공사에서 업체가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 인증하고 개당 1,547원의 검정료 징수 (년간 : 총 23억원)</p>	<p>○ 산업자원부의 3개 인증기관을 포함한 32개 기관 - 인증수수료 : 188,600원 - 제품시험료 : 1,692,000원 *5개 시험분야(유선, 무선, 전자파장애·내성,안전)로 구분하여 시험능력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함</p>
-------------	--	---	--

(나)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 당위성

(문제점)

- 유사한 3개 인증(또는 형식승인) 모두를 취득하게 하므로 인력·시간의 낭비,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저하

- 생산 후 납기 지연 : 1~2주 이상 소요

- 3개 형식승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품시험 방법은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함 (3개 인증기관 시험항목 비교표 별첨 참조)

- 소방법 : 1개 항목(가스누출 감지기능 반복 작동시험)만이 별도로나, 이시험은 짐승단자의 개폐 장치동작(ON,OFF)시험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시험방법상 특별한 의미가 없음

- 전기통신기분법 : 안전시험이 모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시험 방법에 포함되어 있어 2중시험을 하고 있으며 단지, 송·수화성(전화기 기능)만을 확인하는 시험이 다름

-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이법 시행령 제36조(형식승인 소방법기계기구등)에서 형식승인대상으로 “수신기”는 규정되어 있으나, 이권 관련심사 하고있는 “간이형수신기”는 행정자치부 고시(’99. 8. 3: 1999-49호)에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표시사항에 “본 제품은 법정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”는 문구를 별도로 표시토록 한 것은 법 강제성 여부가 불명하다고 할 수 있음

(개선방향)

① 소방법

- 형식승인 대상품으로 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수신기”에 “간이형수신기”는 포함할 수 없도록 함(현재에는 고시로 추가 규정)

- 간이형 수신기 제품표시 사항에“본제품은 법정시설로 인정 할 수 없다”는 문구를 표시함

- 또는 간이형수신기 부분만의 부분품을 사전에 별도로 형식승인하여 미디어폰 제품 조립 후 완제품에 대한 중복시험을 억제 토록함



② 전기통신 기본법

- 전기통신법에 의한 홈오도메이션기기(HA)에 대한 형식승인은 전화기능의 송수화기능 부분만을 사전에 별도로 시험하여 형식승인하고 완제품 조립후 중복시험을 억제 토록함

(기대효과)

① 정부행정의 효율증대

- 중복규제를 억제하므로 행정서비스 향상, 인력절감 및 예산절감
- 민원인(제조업체)에게 불필요한 2중의 인증강요를 배제함으로써 민원의 편의 및 신뢰증진

② 생산업체의 인력비용 및 시간절약

- 홈오도메이션기기를 소방법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시험수수료 부담 연간 20~30억원 절약 - 평균 1업체당 연간 1억원 이상 절약(관련업체 : 15개 중소기업)
- 제품출하 기간단축(1~2주)
- 중복되는 인증 및 검사의 폐지로 민원불편 해소
- 절약된 인력, 비용, 시간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재 투입하므로 품질의 개선과 국제 경쟁력 향상

【참고】

- 산업생산시설과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는 산자부 소관임

예 : 차량, 항공기, 선박, 광통신등 통신케이블, 철근, 시멘트, 벽돌 건축자재등

※ 부처별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, 현재 산업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는

- 자동차, 선박, 항공기등은 → 건설교통부
- 전화선, 통신케이블등은 → 정보통신부
- 경운기, 농기계, 비료등은 → 농수산부
- 연필, 볼펜, 칠판등 학습용 기자재는 →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생산과 제품을 책임, 관리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있음

첨 부 : 1. 전기맞사기 시험항목 비교 검토 1부.

2. 3개 인증기관 시험항목 비교 1부. 끝 **표준**